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

소관부서 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2020. 2. 28 규칙 제666호

제1조(「이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개정) 「이천시 재무회계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9조제2항 중 “해득”을 “이해”로 하고, “도말”을 “삭제”로 한다.

제2조(「이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의 개정) 「이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미연에”를 “미리”로 한다.

제3조(「이천시 농업산·학협동심의회 규칙」의 개정) 「이천시 농업산·학협동심의회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통리”를 “총괄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